

2024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

서울특별시에서는 역량있는 3040 경력보유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「2024년 서울우먼업 인턴십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6월 3일
서울특별시

1 사업 개요

☐ 사업명 : 2024년 서울우먼업 인턴십

☐ 사업목적

- 임신, 출산,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직무적응력 향상
- 전문자격증 소지 또는 전문 경력을 보유한 여성과 채용수요가 있는 성장 유망산업을 매칭, 기업에게는 인건비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참여자와 기업 모두에게 고용안정성 제고

☐ 신청자격 : 서울 소재,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

* 예외)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, 해당 기업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① 벤처기업 ② 가족친화인증기업

☐ 접수기간 : 2024. 6. 3.(월) 09:00 ~ 7. 31.(수) 18:00

(※ 수시선정 및 매칭 운영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)

☐ 모집규모 : 70개 내외 기업

☐ 유형별 세부내용

구분	채용연계형	프로젝트형(디지털마케팅/IT개발)
개념	채용수요에 맞춘 경력보유 구직희망여성 매칭	우먼테크 IT·디지털마케팅 교육수료생 매칭
기업 소재지	서울시	
기업유형	중소기업	
근무기간	3개월	2개월
근무유형	주40시간(전일제), 주35시간(유연근로), 주30시간(유연근로)	
기업모집 일정	6. 3.(월) ~ 7. 31.(수)	
매칭 및 면접	6. 10.~ 8. 21. 수시 운영	8. 1.~8. 21.
인턴십 기간	7~11월(기간내 3개월)	9~10월(2개월)
비고	유연근로제 운영 기업 선발 우대 및 우선 매칭	※해당 직무 채용시 참여 가능 - 디지털마케팅, IT(웹개발) 분야 채용 희망 기업

☐ 인턴십 기간 : 인턴십 체결일로부터 3개월(채용연계형), 2개월(프로젝트형)

☐ 추진과정 ※ 매칭: 참여기업이 제출한 직무기술서와 참여자 경력 및 희망 직무 고려하여 배치



2 신청자격 및 요건

❖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(모집시작일)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,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

☐ 신청자격 (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)

(공통)

-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, 상시 근로자* 5인 이상인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 기업
 - * 상시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,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
 - 예외)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,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(벤처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등)를 제출하여야 함
 - ① 벤처기업 ② 가족친화인증기업
- 인턴참여자 면접심사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

☐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

-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파견업체* 및 공급업체 (*근로자파견업체 내근직 근무는 신청 가능)
-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
-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 - 단, 숙박업종 중 호텔업,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
- 노사분규중인 사업장, 임금체불 사업장(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)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)
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의 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·인척관계인 사람을 인턴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
- 기타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
3 지원내용

☐ 인턴 매칭

- 기업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력보유여성 인턴 매칭

☐ 인턴십 인건비

- 서울시 생활임금(시급 11,436원)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지원하며, 참여 유형·근무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(월 최대 2,390,124원 (주 40시간))

※ 참여기업과 인턴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이며, 기업부담금은 자체 부담해야 함

☐ 우먼업 고용장려금

- 우먼업 인턴십 참여 후 정규직 혹은 상용직 전환 고용 후 3개월 만근 확인 시, '우먼업 고용장려금' 추가 지원(총 300만원)

☐ 연계프로그램 등

- 기업 일·생활균형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일·생활균형 컨설팅
- 취업이음지원관 운영[기업 현장 컨설팅 및 참여자 상담 관리(2회)]

4 신청방법 및 절차

☐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(서울우먼업 홈페이지 <https://swup.seoulwomanup.or.kr>)

☐ 근무유형 : 인턴십 유형에 따라 전일제, 시간제로 구분하여 모집

구분	전일제	시간선택제(유연근로)		비고
근무시간	주 40시간(일 8시간)	주 35시간(일 7시간)	주 30시간(일 6시간)	선택
휴게시간	일 1시간	4시간당 30분 필수		시급에 포함되지 않음
시급	11,436원(서울시 생활임금 적용)			—
월급	월 2,390,124원	월 2,092,788원	월 1,795,452원	세전 급여

☐ 제출서류

구분	제출 목록	비고
필수 제출	기업참여신청서	온라인 작성
	참여기업 직무기술서	온라인 작성
	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	온라인 작성
	사업자등록증	파일첨부
	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파일첨부(개인정보 마킹)
	22~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	파일첨부
	중소기업확인서 혹은 중견기업확인서(경력채움 해당)	파일첨부
	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	파일첨부
해당업체	기업관련 인증서	파일첨부 (벤처기업, 강소기업, 고용우수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서울시 및 정부인증)

5 선정 방법

☐ 심사기준

- 서류심사 : 제출서류를 근거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턴근무 수행 적합 여부 평가
- 선정조건 : 합산 점수 70점 이상

심사항목	세부항목	배점(100)	방법
기업 기초평가 (60점)	참여필수 요건 부합	60	정량
참여자 업무 내용의 구체성 (10점)	직무적절성 및 업무 내용 구체성	10	정성
인턴 직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(10점)	직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 구체성	10	정성
사업 목적성 부합 (20점)	인턴십 유연근무(시간제) 운영 여부	10	정량
	일자리 창출 기여 (사업 종료 후 연계고용 계획)	10	정성
가점 (기업인증)	- 강소기업(고용노동부, 서울형) 1점 - 벤처기업 1점 - 이노비즈, 메인비즈 1점 - 기타 서울시 및 정부 부처 인증 1점	+5 (최대)	정량

6 인건비 지급 및 부정 수급 관리

☐ 인건비 지급

- 지급방법
 - 인턴의 급여는 기업의 급여일에 지급함 (급여 지급은 익월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함)
 - 참여기업은 인턴 참여자에게 급여 선지급 후, 5일 이내 우편업 인턴십 홈페이지를 통해 인건비 지원 신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
 - 재단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15일 이내 인건비를 지급함
 - 기업의 4대보험 부담금 및 초과근무수당 등은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음(기업 자부담 필수)

○ 지급절차 및 시기

절차		기업↔인턴	기업→여성가족재단 (우먼업 홈페이지)	여성가족재단	여성가족재단→기업
양 식 작 성	인턴	- 근태확인서 - 업무일지	—		—
	기업	인턴 서류 검토 및 급여 지급	- 지원금신청서(시스템) - 업무일지(시스템) ▶ <제출서류> - 급여명세서 - 송금확인증(송금증)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- 기업 통장사본 - 근태확인서	제출서류 검토 및 인건비 지급 *필요시 재작성 및 재제출 요청	▶ 월 인건비 지급
	시기	~급여일	급여일~5일 이내	—	제출후 15일 이내

□ 부정수급 관리

○ 부정수급 기준

구분	위반 행위	제재조치
인위적 감원	— 인턴지원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	—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
지원금 부정수급	— 기존직원 인턴 채용 — 인턴 지원자,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—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	— 인턴지원 협약 해지 —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
인턴관리	— 인턴교육 및 인턴 관리 미흡	— 1차 주의→2차 경고
기타	— 인턴지원 협약 등 위반 — 운영기관의 지도·요구 불응 (이행서류 미제출, 지연제출 포함)	— 1차 경고→2차 약정해지

※ 부정수급 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은 향후 우먼업 인턴십 참여 배제

7

기타 유의사항

☐ 사업 참여제한 및 재참여 가능 사유

구분		세부내용
인턴십 참여제한		- 제한없음
중도포기시 재참여 가능여부	기업의 법 위반·폐업시	- 해당기업 또는 동일 대표이사가 재직한 기업은 향후 인턴십 참여 배제
	인턴의 타사 취업	- 기업 희망 시 잔여 기간 내 재매칭 가능(단, 연계 후 7일 이내 중도포기시) - 해당년도 매칭 실패 시 재참여 가능

☐ 그 밖의 유의사항

- 기업의 대표(또는 인사담당자)는 인턴 채용면접심사 시 참석해야 합니다.
- 기업은 인턴의 교육, 세미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.
-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연수,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 참여를 제한합니다.
- 인턴의 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·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은 연계를 배제합니다.
- 기업의 인턴십 참여 횟수는 제한 없으나, 우먼업 인턴십 참여를 통해 매칭된 인턴을 1년 이상 연계 고용한 경우 차기 인턴십 참여시 선발 우대합니다.
- 사업 선정 이후 특정 사유(기업의 범위반 및 폐업, 인턴의 타사 입사)를 제외하고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, 기타 사유로 중도 포기 시 향후 동 사업 참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- 인턴의 타사 입사 등 참여기업의 귀책없이 인턴십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 한해 재매칭 가능합니다. 단, 요건 일치 기업/인턴이 없을 시 사업연도 내 재매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인턴십 참여자는 동시 모집 중입니다.

○ 궁금하신 사항은

- ▲ ‘서울우먼업프로젝트’ 홈페이지(<https://swup.seoulwomanup.or.kr/>),
- ▲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(대행기관) 대표전화 (☎1660-3040, 3번 기업문의),
- ▲ 카카오톡 ‘서울우먼업프로젝트’ 채널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